

제27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
제1차 회의 2021. 3. 22.(월)

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
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자치행정위원회

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

1. 제안경과

본 동의안 2021년 3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3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국내·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
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”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「지방자
치법」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고문, 수석부회장 직 추가(안 제5조)
- 나. 임원 임기 연장(안 제6조)
- 다. 정기총회 횟수 조정(안 제7조)
- 라. 사무국 지위 승격(안 제14조, 제15조)
- 마. 분과위원회 신설(안 제1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기획예산과
- 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 「지방자치법」 제158조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 개정내용은 안 제5조 및 제7조에 수석부회장 1명과 고문직을 신설하였고, 안 제6조 및 제8조에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정기총회 횟수를 연1회로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.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